

2025년도 『생산성경영체제』 보급·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·중견·중·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(이하 ‘생산성경영체제’)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기업(기관)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일
한국생산성본부 회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생산성경영체제 모델을 산업계에 보급하여 기업이 경영체제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,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역량향상을 지원

□ 지원 내용

- 기업의 생산성경영체제를 진단하여 현재의 경영 역량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등급 인증
- 기업진단 후,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고, OJT(On the Job Training) 컨설팅 방식으로 과제 해결 지원

□ 사업비 지원

- 기업진단 및 컨설팅 수행 비용의 10~40%^{*}를 매칭 지원

* 참여기업 업종 및 평균 매출액(3개년) 규모에 따라 지원율 차등 적용

2. 사업 대상

□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기업(기관)

◦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소비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
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	C33402 중
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, 오락 용품 제조업	C33409 중
담배중개업	G46102 중
주류, 담배도매업	G46331, G46333
숙박업 및 주점업(단,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지원 가능)	I55 ~ 56
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J5821 중

② 연체,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<별표 1> 신용정보관리 기준 3. 신용도 판단 정보, 5. 공공정보의 1) 체납 정보 등”에 등록 중인 기업(단. ③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)

③ 파산, 회생절차 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(단,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

④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

3. 신청유형

□ (개별형) 기업(기관)이 직접 한국생산성본부(전담 기관*)에 신청

◦ 기업(기관)이 전담 기관에 직접 참가 신청하고, 자사의 체계적인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생산성경영체제를 도입

* 전담 기관 :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 한국생산성본부

□ (상생형) 기업(기관)이 지원하는 기업(협력사, 회원사, 계열사, 파트너사 등)을 모집/선정하여 전담 기관에 일괄 신청

◦ 기업(기관)이 협력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 역량향상을 지원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구현

- 기업(기관)이 지원 대상 협력 기업을 선정하고 참가 신청 방법을 안내 하거나 참가 신청 자료를 전담 기관에 전달

□ (연계형) 수행기관(전담 기관에서 지정)이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전담 기관에 일괄 신청

〈 2025년 수행기관 〉



[전문 분야] 소기업



[전문 분야] 금융·보험업, 지방자치단체



[전문 분야] 중소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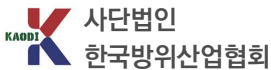
[전문 분야] 에너지산업



[전문 분야] 지역혁신기관



[전문 분야] 가족친화기업, ESG



[전문 분야] 방위산업, 중견·대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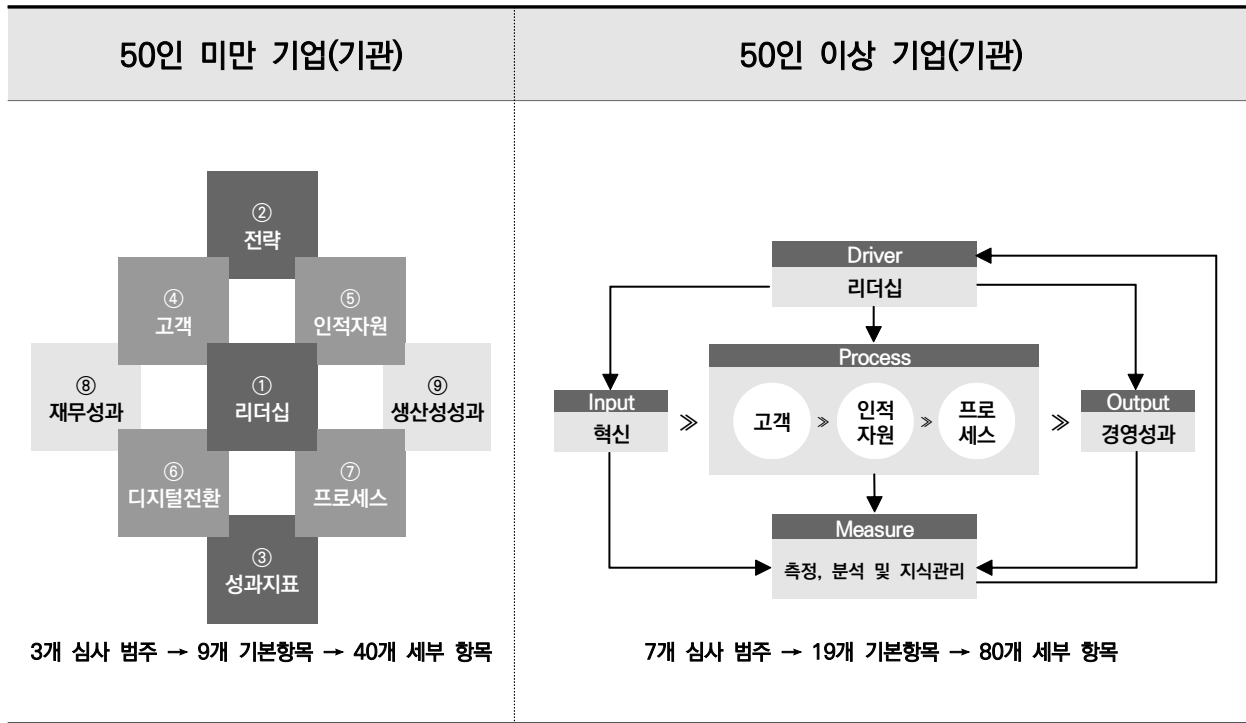
[전문 분야] 제조업, ISO

4. 사업 내용

□ (기업진단) 생산성경영체제 모델(심사 기준)에 따라 진단 및 등급 평정

- 신청기업(기관)이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
 - 생산성경영체제 전문 심사원을 위촉(1~6명)하여 방문 및 진단(2~5일) 수행
 - 투입 인원과 일수는 Man-Day** 기준에 따르며,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커짐
- ** Man-Day(이하 'MD'라 함) : 1명의 인원이 1일 투입되는 수행 단위(※7p. 참고)

〈 생산성경영체제 기업진단 모델 〉



- 참가 기업(기관)의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고, 맞춤형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등급을 평정
 - 생산성경영체제는 등급 인증 방식이며, 유효기간 3년

〈 기업 규모별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체계 〉

50인 미만 기업(기관)		50인 이상 기업(기관)		
점수	경영혁신 유형	점수	인증 등급	역량성숙도 기준
⇒	⇒	901 ~ 1,000	Level 10	Stage 5 Visionary 최적시스템 구축
		801 ~ 900	Level 9	Stage 4 Agile 변화대응시스템 구축
901 ~ 1,000	선도형	701 ~ 800	Level 8	
		601 ~ 700	Level 7	
801 ~ 900	혁신형	501 ~ 600	Level 6	Stage 3 Disciplinary 표준시스템 구축
		401 ~ 500	Level 5	
701 ~ 800	성장형	301 ~ 400	Level 4	Stage 2 Repeatable 기본시스템 구축
601 ~ 700	창업형	201 ~ 300	Level 3	
0 ~ 600	초보형	101 ~ 200	Level 2	Stage 1 Informal 시스템 형성 초기
		0 ~ 100	Level 1	

□ (OJT컨설팅) 기업진단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 및 현장 지도

- 기업진단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과제 중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수행 과제를 확정하여 컨설팅 지원
 - 수행 과제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(1~3명)하여 방문 및 지도
- 참가기업(기관)은 생산성경영체제 등급(Level) 유효기간 3년 동안 1년 단위로 재진단 및 OJT컨설팅 복수 진행 가능

〈 생산성경영체제 OJT컨설팅 주요 과제 〉

분 류	범 주	과 제 명
공 통		01. 기업 지원사업 활용계획 수립 02. 혁신 인증계획 수립(벤처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가족친화 인증 등)
전략시스템	리 더 십	03. 비전 체계도 수립 04. 경영자 리더십 코칭
	전 략	05. 중장기 성장 로드맵 수립 06. 비전-전략-성과관리 관리자 역량향상(교육)
	성 과 지 표	07. 전사 사업계획 수립 08. 성과지표체계 구축
	고 객	09. 마케팅 전략 수립
운영시스템	인 적 자 원	10. 인적자원관리 매뉴얼 구축 11. 인사 평가 체계 구축 12.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
	프 로 세 스	13. 기술 역량성숙도 TRL(Technology Readiness Level) 진단 14. R&D 지원사업 참여전략 수립 15. 품질개선(6 Tool) 16. 제조원가 진단 및 개선
	디 지 털 전 환	17. RMS(Real-time Management System) ^{***} 구축 *** 경영관리, 인력관리, 재고관리, 원가관리, 물류관리 등 엑셀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18.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수립

□ (기업진단) 및 (OJT 컨설팅)을 참가 기업(기관)이 선택적으로 신청하여
사업 실행

- 실행 유형 ① : 기업진단(최초, 사후, 갱신)
- 실행 유형 ② : 기업진단(최초, 사후, 갱신) + OJT컨설팅(과제 해결)
- 실행 유형 ③ : OJT컨설팅(과제 해결)

5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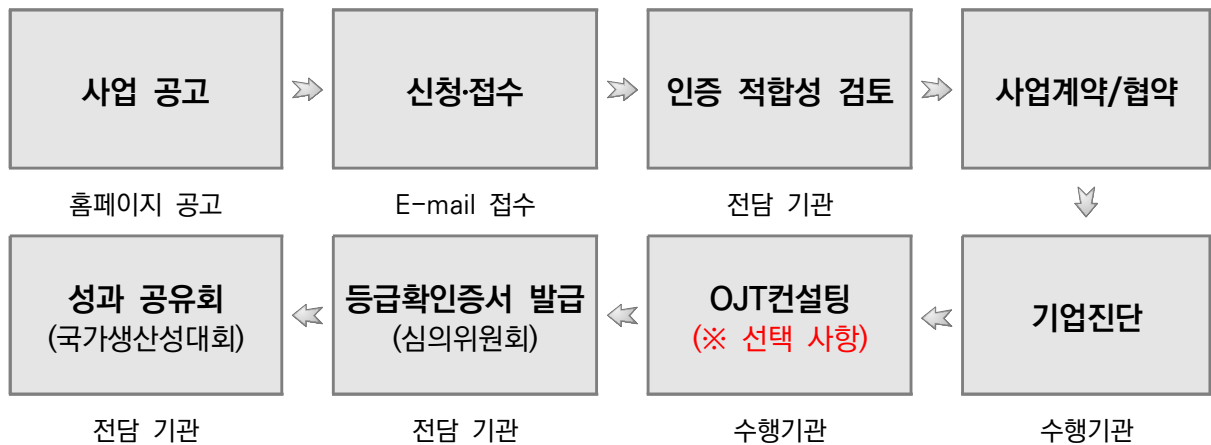
□ (신청접수) 신청 서류 구비하여 전담 기관에 온라인(이메일) 제출

- 개별형 추진기업(기관) : 참가신청서, 회사소개서, 재무 자료(3개년),
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상생형 추진기업(기관) : 사업협약서, 지원 대상기업 명단
- 연계형 추진기업(기관) : 수행기관에서 일괄 처리

※ 신청 서류 서식은 생산성경영체제 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
- 생산성경영체제 사업 홈페이지 : <http://pms.kpc.or.kr>

6. 추진 절차

□ 연중 상시 접수(~2025. 12. 5. 최종 마감)하며,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



7. 유의 사항

□ 등급 확인증서 취득 이후에도 연체, 국세 체납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, 유흥·향락·불건전 오락사업 등 사행성 사업 기업, 공정하지 못한 영업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은 취소 및 정지될 수 있음

□ 사업비 산정은 매칭 지원(비용 부담) 방식이며 기업의 종업원 수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

◦ 중소기업

- 기업진단 비용 = (900천원 × MD) × (1-PMS 지원율(※ 8p. 참고)) + 부대비용****

**** 부대비용 = 심의비(심의위원회) + 발급비(확인서) + 인쇄비(보고서)

- OJT컨설팅 비용 = (1,000천원 × MD) × (1-PMS 지원율)

◦ 중견기업

- 기업진단 비용 = (1,100천원 × MD) × (1-PMS 지원율) + 부대비용

- OJT컨설팅 비용 = (1,200천원 × MD) × (1-PMS 지원율)

◦ 대기업

- 기업진단 비용 = 1,300천원 × MD + 부대비용

- OJT컨설팅 비용 = 1,400천원 × MD

〈 생산성경영체제 수행 MD 적용 기준 〉

기업규모 (단위: 종업원 수, 명)	기업진단 (단위: MD)	OJT컨설팅 (단위: MD)
1 ~ 20	2	과제별 최대 40 이하
21 ~ 49	4	
50 ~ 99	6	
100 ~ 199	9	
200 ~ 299	12	
300 ~ 499	15	
500 ~ 999	18	
1,000 ~ 1,999	20	
2,000 ~ 3,999	25	
4,000 ~	30	

※ OJT컨설팅 MD(Man-Day)는 기업 신청과 과제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함

〈 생산성경영체제 지원을 적용 기준 〉

구분	판단 기준	업종 코드	업종	평균 매출액	지원율
중소기업	평균 매출액 1,500억원 이하	C14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50억원 이하 450억원 이하 900억원 이하 1,500억원 이하	40% 30% 20% 10%
		C15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
		C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
		C24	1차 금속 제조업		
		C28	전기장비 제조업		
		C32	가구 제조업		
	평균 매출액 1,000억원 이하	A	농업, 임업 및 어업	1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1,000억원 이하	40% 30% 20% 10%
		B	광업		
		C10	식품 제조업		
		C12	담배 제조업		
		C13	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 제조업 제외		
		C16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 제조업 제외		
		C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
	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	
		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	
	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		
	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
	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
	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
		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
		D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	
		E36	수도업		
	F	건설업			
	G	도매 및 소매업			
	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	C11	음료 제조업	80억원 이하 240억원 이하 4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	40% 30% 20% 10%
		C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	
	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
		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
	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
		C33	그 밖의 제품 제조업		
		E	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※수도업, E36 제외)		
		H	운수 및 창고업		
		J	정보통신업		
		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	C34		
	M	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
	N		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※임대업, N76 제외)		
O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		
R	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			
S	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			
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	I	숙박 및 음식점업	4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4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	40% 30% 20% 10%	
	K	금융 및 보험업			
	L	부동산업			
	N76	임대업			
	P	교육 서비스업			
중견기업	非 중소기업, 非 대기업	-	-	-	10%
대기업	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	-	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內 소속기업	-	0%
공공기관	공기업, 준정부, 기타공공기관	-	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(www.alio.go.kr)	-	0%

※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- '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'에 근거함

8. 문의 및 확인

□ 문의처

전담 기관	전 화	e-mail
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리더십센터	02-724-1083	jyocho@kpc.or.kr